

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문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
2020. 12. 8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
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

- 기 간 : 2020. 12. 8.(화) 00:00부터
2020. 12. 28.(월) 24:00까지
- 대상시설 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
감성주점
- 조치내용 : 대상시설에서의 집합금지
-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2호

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※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와 함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8.

대전광역시

